

#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장민선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5-11

#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장 민 선

#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ying Age Standards on  
Legislations

연구자 : 장민선(부연구위원)  
Jang, Min-Sun

2015.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입법에 있어서 법의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 개개인이 가지는 특성이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획일적 기준으로서 ‘연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등이 부재함으로써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른 연령이 규정되기도 하고, 다른 개념에 대해 연령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집행자나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따라서 입법상 연령 기준을 채택할 때에는 i)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능력이 고려되었는가, ii)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준수했는가, iii) 체계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상의 원칙에 따라 현행 법령의 연령 기준 적용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현행법상 연령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법령을 조사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연령 기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연령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고찰해봄으로써 연령 기준 설정에 있어서 고려사항과 현행법상 연령기준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 연령기준 설정의 의의 및 원칙

- 연령이라는 요소는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게 부여된 귀속적 속성으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각의 시점에서 권리 행사 또는 의무 이행 등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기준임
- 특정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그 개별적인 사정에 관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연령에 따른 법 적용 대상의 유형화임
- 입법상 연령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능력에는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학능력, 경제적 자립능력, 업무수행능력 등이 있고,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익과 사익 간에 비교형량을 해야 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체계적합성을 준수해야 함

### □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유형별 검토

- 특정한 연령대를 나타내는 개념인 영유아, 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소년, 미성년자, 청년, 노인, 고령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을 조사하여 입법목적과 연령의 관계, 체계적합성 등을 검토함

### □ 연령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른 법령 검토

- 연령 기준을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 부여 기준, 의무 부과 기준, 자격 취득 또는 상실 기준, 연령등급제, 복지 대상 설정 기준으로 나누어 공통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요소 등을 도출함

□ 연령 관련 법적 쟁점의 검토

- 다양한 연령 개념 간의 연령 범위의 중복성 및 동일 개념에 대한 상이한 연령 기준을 검토함
  - 영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연소자 등 유사한 개념들의 연령 기준을 비교 분석함
  -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동일한 개념에 대해 법령마다 상이한 연령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함
- 선거 연령 인하,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국내외 논의를 검토함

□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및 연령 관련 법제 정비 방향

-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세가지 원칙에 따라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함
  - 연령 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능력과 요소들을 도출하고, 연령기준 설정시 차별금지 등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며, 체계적합성 원칙에 따라 아동, 청소년 등의 연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함
- 특히 아동과 어린이 연령 관련 법제 정비사항을 제시하고, 청소년 관련 법제는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연령의 조정 및 매체 관련 법률과의 연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함

### Ⅲ. 기대효과

- 입법상 연령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아동, 청소년 관련 법제에서 연령 기준 정비에 관한 입법 참고 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연령기준, 아동연령, 청소년연령, 미성년자, 선거권연령, 청소년기본법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As an objective and uniform standard, “Age” is often used in choosing subjects of application of law on legislation, without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 Absence of guidelines in setting age standards on legislation causes confusion to people and legal executors and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differences and redundancies of ages in some legislations.
- For this reason, it needs to consider three principles-adequate abilities contributable to legislative purpos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systematic consistency- in setting age standard and analyse applications of age standard according to them.

### Purpose of this study

- This study is aimed to proposing useful considerations in age standards and effective alternatives of the existing Act through examining the provisions classified by age concepts and legal characters, analysing their validity and efficiency and contemplating related legal issues.

## II. Main Contents

### Meaning and Principles in Establishing Age Standard

- Age is a belonged characteristics to each individual by nature and causes legal effects like rights and duties on every points from birth to death.
- If someone is corresponding to specific age, he or she is applied to the Act regardless of his or her individu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age standard.
- In establishing legislative standards regarding to age, we have to consider various abilities, such as mental capacity, capacity for action, learning ability, economic capacity, job performance, and balanc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ith conforming to systematic consistency.

### Review of Age Standards by Type on Existing Legislations

- In Chapter 3, I examine to study and existing legislation using infant, early childhood, child, juvenile, minor, youth, elders or seniors and analyse relations to legislative purpose and systematic consistency.
- In next part, I find the common considerations in age standards divided into ones like guarantee of rights, performance of duties, qualifications and disqualifications, rating system, and setting of beneficiaries.

Examination of Legal Issues related to Age

- In Chapter 4, I review differences and redundancies among various age standards.
  -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concepts such as infant, child, juvenile, minor
  - case study of different age scope to the same concept like juvenile age
- Besides, I introduce and analyse legal issues regarding to age, such as voting age cut, age lowering of criminal minors, age raising of elders

Considerations in Setting Age Standards and Directions of Improving Existing Legislations

-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xisting Act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three principles, I suggest capacities and factors to consider in setting age standards and emphasize not to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and systematic consistency
- Finally, I propose directions to improve existing legislations related to child and kid age, and age adjustments in juvenile age Acts like Framework Act on Juvenil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nd so on.

### **III. Expected Effect**

-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vide guidelines for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effective age standard on legislations.
  
- This report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research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and revise the current legislations regarding to child and juvenile age.

➤ **Key Words : Age Standard, Child Age, Juvenile Age, Minor, Voting Age, Framework Act on Juvenile Act**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5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7
제 2 장 입법상 연령 기준 설정의 의의 및 원칙 .....	19
제 1 절 입법상 연령 기준의 의의 .....	19
1. 입법상 ‘연령’의 의의 .....	19
2. 법적용대상 구분을 위한 유형화 기준 .....	20
제 2 절 연령 기준 설정의 원칙 .....	21
1.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능력’의 고려 .....	21
2. 헌법상 기본권 보장 .....	23
3. 체계적합성의 원칙 .....	26
제 3 장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유형별 검토 .....	29
제 1 절 연령 개념에 따른 검토 .....	29
1. 영아, 영유아, 유아 .....	29
2. 아동, 어린이 .....	38
3. 청소년, 소년, 연소자 .....	48
4. 미성년자 .....	75

5. 청 년 .....	82
6. 노인, 고령자 .....	87
제 2 절 연령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른 검토 .....	94
1. 권리 부여 기준 .....	94
2. 의무 발생 기준 .....	101
3. 자격 취득 또는 상실 기준, 결격 사유 .....	105
4. 연령등급제 .....	116
5. 복지 대상의 설정 기준 .....	117
제 3 절 소 결 .....	119
제 4 장 연령기준 관련 법적 쟁점 검토 .....	125
제 1 절 연령 용어의 다양성과 중복성 .....	125
1. 영유아와 아동, 어린이 .....	125
2. 아동과 청소년 .....	126
3. 청소년과 연소자 .....	127
제 2 절 동일 개념의 상이한 연령기준 .....	128
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	128
2. 청소년보호법과 매체 관련 법률 .....	131
제 3 절 선거연령의 인하 .....	136
1. 선거연령의 변천사 .....	136
2. 선거연령의 인하 논의 검토 .....	136
3. 각국의 선거연령 .....	138
제 4 절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	140
제 5 절 노인 연령의 상향 .....	143

제 5 장 결 론 .....	145
제 1 절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	145
1. 입법목적에 적절한 능력의 고려 .....	145
2. 헌법상 기본권 보장 .....	147
3. 체계적합성의 원칙 .....	147
제 2 절 현행 법령상 연령기준 정비 방향 .....	148
1. 아동 관련 법령 .....	148
2. 청소년 관련 법령 .....	149
참 고 문 헌 .....	151
《부 록》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표 .....	155

##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입법에 있어서 법의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 입법기술상으로 특정 연령 범위에 속하는 자연인을 지칭하는 일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연령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sup>1)</sup> 우선, 다수의 법률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소년, 미성년자, 청년, 노인, 고령자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에 대해 연령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연령을 나타내는 특정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민연금수급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자격을 상실 또는 취득할 때 특정 연령을 직접 명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입법에 있어서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이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규제의 대상을 선정하거나, 법률이 시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복지 혜택 또는 지원의 대상을 선정해야 할 때, 개개인이 가지는 특성이나 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입법에 있어서 연령 기준을 채택할 때에는 그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우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령 기준을 채택할 때에는 행위능력·의사능력·책임능력, 교육법상 수학능력,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독립 내지 자기보호능력, 경제적 자활능력, 사회활동능력, 공적 의무능력, 기타 특별한 정책적 보호 필요성 등을

1) 이준우, “연령에 따른 법령적용 유형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18호, 한국법제연구원, 2000, 148쪽.

고려하게 된다.<sup>2)</sup>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 기준을 채택하기도 하고, 동일한 연령대에 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연령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법령의 관례에 따라 입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해석과 집행상 혼란이 야기되며, 수범자인 국민도 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연령 기준을 채택할 때 고려해야 할 또다른 사항은 바로 규범적 측면에서 연령에 의한 차별 방지 및 체계적합성의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일정한 연령을 법적용대상으로 선정할 때에는 그 연령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의 침해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입법형성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헌법의 기본 원칙이나 법률위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는 체계적합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령 기준을 채택할 때 고려해야 할 이상의 세가지 원칙-첫째,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둘째, 헌법상 연령차별금지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헌법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는가, 셋째, 체계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을 중심으로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연령 기준을 채택할 때 고려사항과 현행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연령 기준에 관해서 종래 논의되어 왔던 법적 쟁점들, 예컨대 청소년 법체계에 있어서 연령 정비, 선거연령 인하, 노인 연령 상향 등에 관하여 그 논의의 경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이준우, 앞의 글, 161쪽.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현행법상 연령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법령을 조사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연령 기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향후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과 연령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연령을 채택하고 있는 법령을 전부 검색하여 정리하였고, 연령에 관한 쟁점을 다룬 각종 토론회, 공청회 자료 및 학술논문, 판례,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였으며, 외국 입법례에 대해서는 7월과 10월 개최된 워크숍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 연령기준 설정의 의의 및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입법에서 연령기준을 채택하는 이유와, 연령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 또는 준수해야 할 몇가지 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즉, 연령기준시 고려해야 할 능력과 헌법상 기본원칙, 그리고 체계적합성의 원칙에 관해 살펴본다.

다음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연령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법령을 몇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일정한 연령대를 나타내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법령을 그 개념별로 분류하여 연령 기준 적용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연령 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 발생, 의무 부과, 자격 취득 및 제한, 연령등급제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함으로써 입법상 ‘연령’을 설정할 때 공통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법령에 대해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헌법상 기본원칙이나 체계적합성의 원칙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여 심층 검토할 것이다. 연령을 나타내고 있는 개념들이 연령을

중복해서 규정하고 있는지,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청소년 관련 법체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 연령 기준의 통합 또는 정비’ 등에 관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각국의 청소년 연령 등을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연령 기준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 인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노인 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서 논의의 현황과 각국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입법상 연령 기준을 설정할 때의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 제3장과 제4장의 분석 결과 현행 법령의 연령 관련 규정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 제 2 장 입법상 연령 기준 설정의 의의 및 원칙

### 제 1 절 입법상 연령 기준의 의의

#### 1. 입법상 ‘연령’의 의의

나이 또는 연령(年齡)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의미한다.<sup>3)</sup> 연령이라는 요소는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의 귀속적 속성이며 개인의 생애 과정(life course)에 있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의 연령으로 이행하는 누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다.<sup>4)</sup> 나이 또는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태어나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차 노화가 진행되면서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면 국가로부터 연금 등 복지 급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나이 또는 연령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각의 시점에서 권리 행사 또는 의무 이행 등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출생일로부터 일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소위 ‘만 나이’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1살이라고 보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연(年) 나이’ 방식이 있다.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에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나이”, “연령” 검색한 결과이다. -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4) 김경호,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05, 553쪽.

의하도록 하고 있다.<sup>5)</sup> 이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고(민법 제157조),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8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이와 같이 법령에 일정한 연령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연령 계산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이러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 2. 법적용대상 구분을 위한 유형화 기준

일반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규범은 다양한 인간의 행위에 적용될 때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화가 이루어질 때 법규범은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 보호 등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을 특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입법 작용에 있어서 유형화가 필요한 전형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특정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그 개별적인 사정(정신 연령, 구체적 보호 필요성, 연령기준에의 근접성, 연령기준을 벗어난 자와의 형평성) 등에 관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연령에 따른 법적용 대상의 유형화라고 할 수 있다.<sup>7)</sup> 그리고, 이것은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령 범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개입 정도 및 정책의 내용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적용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유형화 기준으로서의 연령은 법령마다 일정한 연령대를 나타내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연령을 정의하거나,

---

5)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6) 홍완식, “아동·청소년 등의 연령기준”, 『입법정책』 제1권 제1호, 입법정책학회, 2007, 18쪽.

7) 홍완식, 앞의 글, 18쪽.

구체적인 연령을 직접 법령에 명시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또한, 입법에 사용되고 있는 연령 기준은 크게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예컨대, 선거권 연령),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기준(예컨대, 병역의무 발생 연령),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기준(예컨대, 국민연금 가입 연령), 결격사유(예컨대,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 등급제도(예컨대, 청소년보호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 제 2 절 연 령 기 준 설 정 의 원 칙

### 1.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능력’의 고려

입법상 연령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sup>8)</sup>

첫째,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이다. 민법에서 의사능력은 개개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sup>9)</sup>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고 보며, 행위능력은 사법상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성년/미성년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성년 연령은 2010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현재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법 제4조는 “행위능력은 19세에 달한 때로부터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책임능력은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으로서, 책임제한능력자(예: 미성년자, 심신상실자)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책임제한능력자의 감독자가 그 책임을 부담

8) 이준우, 앞의 글, 161쪽.

9) 장미희, “우리 민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례”, 『입법상 연령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제1차워크숍 자료집(2015. 7. 23), 2015, 11쪽.

한다.<sup>10)</sup> 형사법에서 ‘책임능력’은 자신의 이성에 의해 법과 불법을 인식하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법을 준수하며,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수학능력은 취학 연령과 검정고시의 자격, 각종 훈련원이나 학교 입학자격과 연결된다.<sup>11)</sup> 또한 공무원 임용자격이나 자격 면허 취득 기준 등에 있어서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반영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자립능력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된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특례로서 자금출처 조사 면제, 체당금 상한액 결정 기준, 피부양자 내지 부양능력자의 기준 등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sup>12)</sup>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양육비 등이 지급되는 아동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도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해서 취학중인 자는 아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도 이러한 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활동능력 내지 업무수행능력도 고려대상이다. 각종 채용·임용시험에 대한 연령 제한, 개인 면허 연령 기준, 정년 연령이 이에 관계된 것이다.<sup>13)</sup>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18세 미만의 자는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자격 요건 또는 자격 상실, 결격 사유를 정할 때 고려되는 능력이다.

---

10) 민법 제753조~제756조. - 장미희, 앞의 글, 12쪽.

11) 이준우, 앞의 글, 156쪽.

12) 이준우, 앞의 글, 156-157쪽.

13) 이준우, 앞의 글, 157쪽.

## 2. 헌법상 기본권 보장

### (1) 연령차별금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에 있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을 같게 규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제11조에는 차별금지 사유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연령에 의한 차별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sup>14)</sup> 및 「고용상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500호, 2014.3.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sup>15)</sup>에 규정되어 있다.

입법자는 연령 기준을 설정할 때, 이러한 헌법 및 법률의 요청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한 연령대를 법적용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그러한 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연소자, 청소년, 노인 등의 보호 및 복지

헌법에서는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연소자의 근로보호와 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복지가 그것이다.

헌법 제32조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소자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으므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의 요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제한,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직종에서의 고용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1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4.5.23.] [법률 제 11791호, 2013.5.22., 일부개정]

제 4 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헌법 제34조제4항에는 국가의 청소년 및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34조는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등에 대해 복지향상 또는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노인은 신체적 노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므로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과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하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청소년 보호 및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또는 복지 관련 입법을 마련할 때에는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취지와 그것이 여기에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민의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하거나 선출될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는 전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선출된 대의기관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sup>16)</sup>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인적 집단에게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

1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5, 148-149쪽.

러한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선거 연령을 규정하는 것이 그것인데,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선거권 행사로부터 배제할 수 밖에 없다.<sup>17)</sup> 입법자는 선거연령의 확정을 통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춘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입법형성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가능하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자는 전반적인 교육현실, 현대 정보사회의 발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전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sup>18)</sup>

### 3. 체계적합성의 원칙

#### (1) 체계적합성의 원칙의 의의

체계적합성 또는 체계정당성의 원칙이란 입법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으로서,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sup>19)</sup> 즉, 입법자가 일련의 규정을 통하여 하나의 규율체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결정은 기존의 규율체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청을 의미한다.<sup>20)</sup> 헌법재판소도 이에 관하여 “체계정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sup>21)</sup>

17) 한수웅, 앞의 책, 152쪽.

18) 한수웅, 앞의 책, 152쪽.

1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890쪽 등

20)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5, 1137쪽.

21) 헌재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이처럼 규범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sup>22)</sup>

이러한 체계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개별 법률 규정이나 개별법률 입법시에는 다른 법률규정 및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23)</sup> 그런데, 이러한 체계적합성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으로 되는 것이다.<sup>24)</sup> 다시 말해서, 입법자가 종래 규율체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에는 중대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합리적인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으로 판단될 것이다.<sup>25)</sup>

## (2) 연령기준에 관한 체계적합성 원칙 적용

입법자는 입법시에 체계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바, 가령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기존의 청소년 보호 법제의 체계를 존중하고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의 정의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청소년의 연령범위와는 다르게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히 중대한 사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법체계는 청소년이란 용어 외에도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 등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고,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도 연령이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집행 상의 혼란을

2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175쪽.

23) 홍완식, 앞의 글, 20쪽.

24) 홍완식, 앞의 글 21쪽.

25) 한수웅, 앞의 책, 1138쪽.

## 제2장 입법상 연령 기준 설정의 의의 및 원칙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범자에게도 예측가능성을 저하시켜 결국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 위배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제3장에서는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연령을 나타내는 개념에 따라 분석, 검토함으로써 체계적합성 원칙 위배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장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유형별 검토

#### 제 1 절 연령 개념에 따른 검토

##### 1. 영아, 영유아, 유아

##### (1) 영 아

##### 1) 형 법

형 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98호, 2014.12.30., 일부개정]
<p><b>제251조(영아살해)</b>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u>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u>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b>제272조(영아유기)</b>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u>영아</u>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형법」 제251조와 제272조는 ‘영아’를 행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에 대해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판결에서도 생후 2개월된 여아를 살해한 행위를 「형법」 제251조를 적용할 것인지,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된 사건에서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26)</sup> 이에 관하여 개념이 모호한 영아란 단어를 신생아로 바꾸어 신생아살해죄로 죄명을 개정하여 형법상 명확한 기준을

26) 대구고등법원 1968. 3. 26 선고 67노317 판결

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27)</sup> ‘신생아’에 관해서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가 ‘출생 후 28일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b>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b> <b>[시행 2013.12.30.] [법률 제12127호, 2013.12.30., 일부개정]</b>
<p><b>제 3 조(의무교육 등)</b>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          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u>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          육은 무상으로 한다.</u></p> <p>② <u>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u>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          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b>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b> ① <u>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          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u>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          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u></p> <p>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          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          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          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7) 전보경, 영아살해죄의 규정과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2013년 9월),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86쪽.

‘영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들 수 있다.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에 따르면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즉,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과 만 3세 이상 만 17세까지의 장애아에 대한 교육을 구분하여 전자는 무상 교육으로, 후자는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다.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 (3) 영유아

#### 1) 영유아보육법

<p><b>영유아보육법</b>                  [시행 2015.1.1.] [법률 제12619호, 2014.5.20., 일부개정]</p>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p>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르면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보육’의 대상으로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이면서 취학 전이어야 한다. 동법에서는 영아와 유아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으면서 영유아를 함께 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술한 「유아교육법」에서의 유아의 정의를 고려해보면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를 ‘유아’로 보고, 출생부터 3세 미만의 자를 ‘영아’로 해석할 수 있다.

2)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p> <p>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p>

영유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또다른 법률은 「모자보건법」이다. 동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영유아’의 개념에 ‘취학 전’이라는 요소를 덧붙인데 반해, 「모자보건법」에서는 순수하게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신생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3)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31호, 2014.12.30., 일부개정]
<p><b>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b> ① 법 제19조제1항28)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p>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31호, 2014.12.30., 일부개정]**

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하 락)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육아휴직의 대상인 자녀를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영유아’로 표현함으로써 전술한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보다 더 넓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p><b>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b>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중략)</p> <p>⑤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li> <li>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li> <li>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li> <li>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li> </ol> <p><b>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b>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p> <p>(하략)</p> <p><b>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b>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p>

도로교통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도로교통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와 영유아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등의 안전을 신경써야 하고,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야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어린이, 영유아,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도로 교통에서의 안전을 특히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 (3) 유 아

#### 1)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6호, 2014.1.28., 일부개정]
<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초등학교 취학 후부터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 3세부터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술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개념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라고 하여 어린이가 아닌 ‘아동’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아동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나, 법적 용어로서는 어린이와 아동은 구분되어 쓰이고 있다. 즉,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어린이’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sup>29)</sup> 등에서 쓰이고 있으면서 아동의 연령보다 연령 범위가 좁은 것(13세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29) 도로교통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2. 아동, 어린이

### (1) 아 동

####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b>제 3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아동이 되는 시기(始期)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18세 미만의 사람’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출생 후 18세 미만의 사람은 모두 ‘아동복지법’의 대상인 아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 지원 등 아동에 관한 정책의 근간이 되는 만큼 그 대상인 아동의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은 일응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전술한 ‘영유아’ 또는 ‘유아’의 개념 및 뒤에서 보게 될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 할 것이다. 즉,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고, 유아교육법에서의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기 때문에 6세 또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6세±1세)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아래 연령에서 영유아 또는 유아와 아동이 중복될 수 있다. 이것은 아동의 연령을 18세라는 상한만 규정하고 있지, 아동이 되는 시기(始期)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연나이 19세 미만의 자’<sup>30)</sup>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아동복지법 등에서의 ‘아동’의 개념과 중복된다. 가령 16세의 사람은 아동복지법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연나이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의 아동에 대한 정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sup>31)</sup> 제3조제1호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sup>32)</sup> 제2조제1호에서 준용되고 있다.

2) 입양특례법

<b>입양특례법</b> <b>[시행 2015.5.18.] [법률 제13322호, 2015.5.18., 일부개정]</b>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이란 <u>18세 미만인 사람</u>을 말한다.</li> <li>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li> </ol>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절차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자 제정되었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은 아동 입양 절차를 아동 복지 중심의 입양 절차를 확립하고,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1년에 입양특례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30)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하여 만나리와 구별되는 연나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31)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32) [시행 2014.9.29.]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 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sup>33)</sup>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하여 전술한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입양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아동복지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 3) 형 법

형 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98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74조(아동학사) <u>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u>

「형법」 제274조에는 아동학사죄가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는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는 행위와 인도를 받은 행위를 아동학사행위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아동의 범위가 전술한 아동복지법이나 입양특례법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개념 자체를 16세 미만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학사행위의 객체로서 아동은 스스로 독립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고 있으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시행 2012.8.5] [법률 제11007호, 2011.8.4, 전부개정] 전부개정 이유 참조

므로 신체적·정신적 종속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아동의 개념보다 좁게 해석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p><b>한부모가족지원법</b>  <b>[시행 2014.7.22.] [법률 제12330호, 2014.1.21., 일부개정]</b></p>
<p><b>제 4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의2. “<u>청소년 한부모</u>”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p> <p>5. “<u>아동</u>”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u>병역법</u>」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p>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 및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의 양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전술한 법들과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 아동이 취학 중인 경우에는 아동의 범위를 22세 미만까지 인정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단서는 2014년 법률 일부개정에서 추가된 것으로서, 종래 동법은 취학 아동의 나이를 22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자녀의 나이가 22세 이상인 경우에는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는데, 자녀가 아직 취학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령 초과를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sup>34)</sup> 특히 자녀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제대

3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2-221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방안」, 2012. 12. 17) 별지 6쪽 참조.

후 복학한 경우에도 연령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군 복학생을 둔 한부모 가족의 고충이 가중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취학중인 자녀가 병역복무를 위해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취학중 자녀의 제한연령을 의무복무기간만큼 가산하여 인정하는 개선안을 권고하였고, 이것이 법률 개정에서 반영되었다.<sup>35)</sup> 그러나, ‘아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비추어볼 때 과연 22세+a의 자에 대해서까지 아동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동’에 대한 다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되, 단서로 일정한 경우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동법에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즉, 동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한부모 중에서도 특히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출산 및 양육 등의 이유로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학업을 지원하는 규정(법 제17조의2)이 마련되어 있다. 이때 24세 이하의 연령 기준을 채택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범위(9세 이상 24세 이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p><b>장애아동복지지원법</b>                  [시행 2013.12.5.] [법률 제11858호, 2013.6.4., 타법개정]</p>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p>

35)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2-221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방안」, 2012. 12. 17) 별지 10쪽 참조.

장애를 가진 아동의 특별한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즉, 장애아동의 개념에서도 「아동복지법」 등에서 규정한 ‘아동’의 연령 범위를 그대로 채용하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도 동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서 규정에 따르면, 동법에서는 아동을 6세 미만의 자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을 6세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6)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8호, 2014.1.28., 일부개정]
<p><b>제13조(취학 의무)</b> ① 모든 국민은 <u>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u>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u>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u>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2.1.] [대통령령 제25961호, 2015.1.6., 일부개정]
<p><b>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b> ① 읍·면·동의 장은 <u>매년 10월 1일 현재</u>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p>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8호, 2014.1.28., 일부개정]
<p><u>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u>를 조사하여 <u>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u>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u>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u>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u>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하 락)</p>

취학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의무가 있다. 물론 사정에 따라 1년 먼저 또는 1년 후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해야 하므로 모든 국민은 만 6세 또는 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이에

따르면, 아동은 만 6세를 기준으로 취학아동명부가 작성되고, 그 다음 해에 취학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b>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b> <b>[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 2014.5.28., 타법개정]</b>
<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18세 미만인 자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고 하여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다.

(2) 어린이

1) 도로교통법

<b>도로교통법</b> <b>[시행 2015.8.11.] [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b>
<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u>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도로교통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에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를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혼자 놀게 해서는 안되고, 영유아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제품”이란 <u>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p> <p>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p>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도 ‘어린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동법 제2조제1호는 “어린이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법에서 어린이는 만 13세 이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 미만인 자를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5.1.29.] [법률 제12391호, 2014.1.28., 일부개정]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li> <li>2. (생략)</li> <li>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li> </ol>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8년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다.<sup>36)</sup> 법 제2조제1호는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 따른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이유 참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의미하므로 최장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포함하며,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이 법에서 ‘어린이’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앞에서 살펴본 법률에서의 ‘어린이’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 연령까지 ‘어린이’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3. 청소년, 소년, 연소자

#### (1) 청소년

#####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5.5.4.] [법률 제13180호, 2015.2.3., 일부개정]
<p><b>제 3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청소년</u>”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p> <p><b>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 ① 이 법은 <u>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u></p> <p>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현재 청소년법체계는 크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대별되어 있고,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본래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외에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청소년기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게 되었다.<sup>37)</sup> 따라서,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본래 「청소년기본법」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청소년’의 정의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sup>38)</sup>

이처럼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만큼 청소년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아동의 범위(18세 미만인 사람)와 겹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성인(19세에 달한 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집행 및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이처럼 넓게 설정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육성 외의 사항을 규정한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상위적

37)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 2005.2.10.] [법률 제7162호, 2004.2.9., 전부개정] 전부개정이유 참조.

38)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고 하여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의 정의를 따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이고,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보호 법제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는 달리 청소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소년보호법

<b>청소년 보호법</b> <b>[시행 2015.6.22.] [법률 제13371호, 2015.6.22., 일부개정]</b>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청소년</u>”이란 <u>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u></p> <p><b>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b>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u>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b>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b>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u>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li> <li>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li> <li>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li> </ol> <p><b>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b>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u>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p>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청소년 법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흡연, 음주, 유해업소 출입행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의 규제와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은 본래 1961년에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9년에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주요 내용이 「청소년보호법」에 흡수되었다. 당시 「미성년자보호법」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만 20세 미만의 자)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제정 당시 「청소년보호법」은 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였으나, 1999년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함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하였다. 보호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그러나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다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 자들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상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여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범위가 다시 조정되었다.<sup>40)</sup> 이러한

39) 홍완식, “아동·청소년 등의 연령기준”, 『입법정책』 제1권 제1호, 2007, 14쪽.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 이유 참조.

연령기준을 ‘만 나이’와 구별하여 ‘연 나이’라고 부르는데, 연 나이 19세 기준<sup>41)</sup>을 채택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아) 18.5세 정도에 청소년보호 연령이 맞추어진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이러한 ‘연 나이 19세’의 기준은 후술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청소년의 개념에도 그대로 도입되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제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친권자 등에게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이나 등급, 게임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강제적 섯다운제’로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그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인터넷게임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동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sup>43)</sup>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16세

41) 법체계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연나이는 매우 이례적인 개념으로서, 현행 법에서는 주로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나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법체계상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황승흠, 청소년보호연령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15쪽.

42) 황승흠, 청소년보호연령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16쪽.

43)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 그

미만의 청소년'을 그 규제 대상으로 삼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12조제4호,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준용되고 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p><b>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b>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u>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u></p>

담배사업법 [시행 2015.1.22.] [법률 제12269호, 2014.1.21., 일부개정]
<p><b>제16조(소매인의 지정)</b>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u>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u></p>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하는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섯다운제는 그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점 등에 비추어 대체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침해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판례집 26-1하, 176 [기각,각하]

<p><b>담배사업법</b> [시행 2015.1.22.] [법률 제12269호, 2014.1.21., 일부개정]</p>
<p><b>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b>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u>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u></p>

<p><b>식품위생법</b> [시행 2015.5.29.] [법률 제12719호, 2014.5.28., 일부개정]</p>
<p><b>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b>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u>청소년 보호법</u>」 제2조에 따른 <u>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u>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li> <li>2. 「<u>청소년 보호법</u>」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u>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u>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li> <li>3. 「<u>청소년 보호법</u>」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u>청소년고용금지업소</u>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li> <li>4. 청소년에게 <u>주류(酒類)</u>를 제공하는 행위 (하 락)</li> </ol>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p><b>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b>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p>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청소년”이란 <u>19세 미만의 자</u>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li> </ol>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법률 제6261호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이 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남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1년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으로 규정되었다가,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었다. 문언상의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동법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정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성매매와 성폭력 등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아동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10년 전부 개정을 통해 법의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sup>44)</sup> 이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44) [시행 2010.1.1.] [법률 제9765호, 2009.6.9., 전부개정]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다.<sup>45)</sup> 이 법의 보호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연령 범위를 종전에 청소년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을 동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이 연령상 구별되지 않고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규정됨으로써 아동을 특별히 규정한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만을 동법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했을 때에도 연나이 19세 미만의 자에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동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호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데, 아동을 청소년과 함께 규정했다는 것은 아동은 청소년과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동을 추가한 것인지 입법 자료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적어도 연령 기준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45)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0.1.1.] [법률 제 9765호, 2009.6.9., 전부개정] 전부개정이유 참조.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b>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b> <b>[시행 2014.7.29.] [법률 제12349호, 2014.1.28., 제정]</b>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0. “<u>청소년</u>”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p> <p><b>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b>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u>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u>「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u>「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b>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b>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u>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p> <p>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u>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u>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p> <p><b>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b> ①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u>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p>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49호, 2014.1.28., 제정]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u>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u>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의 정착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청소년으로서의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에서는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과 마찬가지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0조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도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나, 이 때에도 청소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5세를 기준으로 15세 미만인 경우에 주당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총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5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불문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원칙적으로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15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9조의 근로시간 규정(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과 제70조의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규정(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5.18.] [법률 제13306호, 2015.5.18., 일부개정]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8. “<u>청소년</u>”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u>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u>)를 말한다.</p> <p><b>제29조(상영등급분류)</b>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u>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전체관람가</u>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li> <li>2. <u>12세 이상 관람가</u>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li> <li>3. <u>15세 이상 관람가</u>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li> <li>4. <u>청소년 관람불가</u> : <u>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u></li> <li>5. <u>제한상영가</u> : <u>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u></li> </ol> <p>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b>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b> <b>[시행 2015.5.18.] [법률 제13306호, 2015.5.18., 일부개정]</b>
<p>④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p> <p>⑥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li> <li>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li> <li>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li> <li>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li> <li>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li> <li>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li> </ol> <p><b>제50조(등급분류)</b>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li> <li>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li> <li>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li> <li>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li> <li>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li> </ol> <p>(하 락)</p>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은 본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영화와 비디오물에 관한 내용만을 통합한 것이다. 본래 1997년 구 영화진흥법 규정에 따르면 영화상영등급이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1999년 정부에 의해 제출된 영화진흥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는 미성년자관람불가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즉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상 연령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이 영화산업을 위축시킬 우려 및 청소년보호연령과 영화등급연령기준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만 18세로 그대로 유지되었다.<sup>46)</sup> 구 영화진흥법(법률 제6186호, 2000.1.21., 일부개정된 것) 제21조에 따르면 상영등급이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로 분류되며, 누구든지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의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관람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18세 관람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가 포함된다.<sup>47)</sup> 그러다가 2002년 법률개정에 의해서

46) 홍완식, 앞의 글, 14쪽.

47) 영화진흥법[시행 2000.4.22.] [법률 제6186호, 2000.1.21., 일부개정]

제21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품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등 본편 영화 상영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1.>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관람가” : 12세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2의2.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위의 상영등급분류 4종에 ‘제한상영가’가 새로이 추가되고, 18세 관람가는 ‘연소자 관람불가’로 불리게 되었다. 이 때 ‘연소자’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가 포함되었고, 제한상영가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가 모두 관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sup>48)</sup>

3. “18세관람가” : 18세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④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당해영화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용검토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음란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내용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의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관람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되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가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⑦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다른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 분류의 절차·방법,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 분류의 구체적 기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 보류의 절차·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공개·통보의 절차·방법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1.>

48) 영화진흥법 [시행 2002.5.1.] [법률 제6632호, 2002.1.26., 일부개정]

제21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여서

영화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이 두법을 폐지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해 2006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에 적용하고 있다. 즉, 동법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종전의 18세 관람가를 ‘청소년관람불가’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개념과 불일치하는 것으로서, 보호의

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본편 영화 상영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2.1.26.>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4. “18세관람가” : 18세 미만의 자(이하 “연소자”라 한다)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④ 누구든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⑤ 누구든지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⑥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다른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대상으로서 청소년을 보는 것은 동일하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범위를 되도록 넓히는 것인 반면에, 영비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영화 및 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범위를 낮게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에서 연 나이 19세의 개념을 채택하는 것으로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하였고, 영비법은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를 포함시키게 됨으로써 양법의 차이는 종전의 1년에서 6개월 이하의 차이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sup>49)</sup>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0. “청소년”이라 함은 <u>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u>를 말한다.</p> <p><b>제21조(등급분류)</b>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u>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li> <li>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li> </ol>

49) 황승흠, 청소년보호연령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14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u>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u>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하 락)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변화하고 있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이용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물에 관한 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2006년 법률 제7941호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분법됨에 따라 청소년의 개념 정의, 게임물등급분류 제도 등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동법 제2조제 10호에 따르면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의미하고, 이러한

청소년의 개념은 법 제21조제2항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는 2006년 제정 당시에는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의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2007년 일부개정을 통해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세분화되었다.<sup>50)</sup>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4. “청소년”이라 함은 <u>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u>를 말한다.</p> <p><b>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b>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2. 당해 영업장소에 <u>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u><sup>51)</sup> 다만, <u>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전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음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6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음악

50)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7.4.20.] [법률 제8247호, 2007.1.19., 일부개정] 일부개정이유 참조.

5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 진흥을 위해 창작활동 활성화,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유통 전문화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음악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도 전술한 영비법과 게임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정의(법 제2조제14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에 대해서 심야시간에 노래연습장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즉, 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허용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외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2) 소년

1) 소년법

소년법 [시행 2014.1.7.] [법률 제12192호, 2014.1.7., 일부개정]
<p><b>제 2 조(소년 및 보호자)</b>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教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p>
<p><b>제 4 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p> <p>1. <u>죄를 범한 소년</u></p> <p>2. <u>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u></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u>10세 이상인 소년</u></p> <p>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p> <p>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p> <p>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p>

<b>소년법</b> <b>[시행 2014.1.7.] [법률 제12192호, 2014.1.7., 일부개정]</b>
<p><b>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b>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li> <li>2. <u>수감명령</u></li> <li>3. <u>사회봉사명령</u></li> <li>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li> <li>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li> <li>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li> <li>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li> <li>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li> <li>9. 단기 소년원 송치</li> <li>10. <u>장기 소년원 송치</u></li> </ol> <p>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li> <li>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li> <li>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li> <li>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li> <li>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li> </ol> <p>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u>14세 이상의 소년</u>에게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u>12세 이상의 소년</u>에게만 할 수 있다.</p> <p><b>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b> 죄를 범할 당시 <u>18세 미만인 소년</u>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p> <p><b>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b> <u>18세 미만인 소년</u>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p>

소년법 [시행 2014.1.7.] [법률 제12192호, 2014.1.7., 일부개정]
<p>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p> <p><b>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b>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p>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여기에서 소년은 제정 당시(1958년)부터 ‘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였으나, 청소년의 성숙 정도를 고려하고,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만 19세는 대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2007년 일부 개정을 통해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적용 연령을 하향 조정하였다.<sup>52)</sup> 그리고, 소년법 연령이 점점 낮아질 뿐 아니라 범행내용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기존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낮출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종래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인하하였다.<sup>53)</sup> 따라서, 현재 소년법에 의하면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고,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인 소년이 되어 그동안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던 만 10세와 만 11세의 소년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한편, 동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년법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5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시행 2008.6.22.] [법률 제8722호, 2007.12.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참조.

5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시행 2008.6.22.] [법률 제8722호, 2007.12.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참조.

규정되어 있는데,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만 허용되는 것이 있다. 즉,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연령이 선택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사형 및 무기형이 완화되고 환형처분이 금지되며, 소년범은 분리 수용되지만, 그 소년이 23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연소자

####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p><b>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b>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b>제65조(사용 금지)</b>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p> <p>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연소자’라는 개념은 헌법에 직접 규정된 용어이다. 헌법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근로기준법」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법 제6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여기에서 연소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소자의 근로가 허용되더라도 15세 미만의 자(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며(법 제64조제1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는 근로가 허용되지만 탄력적 시간근로제와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적용하지 않고(법 제51, 52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65조제1항).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법 제69조), 야간이나 휴일 근로도 금지되어 있다(법 제70조제2항).

동법 제67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의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자를 의미하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다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 2014.5.20.] [법률 제12631호, 2014.5.20., 일부개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u>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u>

<b>직업안정법</b> <b>[시행 2014.5.20.] [법률 제12631호, 2014.5.20., 일부개정]</b>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안정법에서도 연소자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동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법은 앞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개념과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 개념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를 하고자 할 때,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소자(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고자 할 때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연소자의 근로가 금지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연소자를 소개해서는 안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연나이 19세 미만자)을 같은 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같이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근로 보호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의 요청을 모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공연법

<b>공연법</b> <b>[시행 2014.3.31.] [법률 제12133호, 2013.12.30., 일부개정]</b>
<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연법 [시행 2014.3.31.] [법률 제12133호, 2013.12.30., 일부개정]
<p>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b>제 5 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b>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sup>54)</sup>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p> <p>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p> <p>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b>제32조(폐기명령 등)</b>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p>

54) 제 9 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 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악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활동 진흥을 위해 1968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법 제5조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 공연물에 대한 연소자의 관람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sup>55)</sup>을 말한다고 하여 앞에서 살펴본 영비법이나 게임물법, 음악산업진흥법 등에서의 청소년의 정의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법 제5조는 청소년보호법 제9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이것을 별도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이라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영비법에서도 종래 18세 미만의 자를 ‘연소자’라고 표현했다가 ‘청소년’으로 변경한 예와 같이 공연법상 ‘연소자’의 개념도 ‘청소년’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sup>56)</sup>

#### 4. 미성년자

##### (1) 미성년자

##### 1) 민 법

민 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81호, 2014.12.30., 일부개정]
<p><b>제 4 조(성년)</b>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3.7.]</p> <p><b>제 5 조(미성년자의 능력)</b>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p>

55) 공연법상 연소자 규정은 2001. 12. 31 일부 개정을 통해 ‘18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56) 홍완식, 연령기준에 대한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2014, 108쪽.

민 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81호, 2014.12.30., 일부개정]
<p>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p> <p><b>제 6 조(처분을 허락한 재산)</b>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p> <p><b>제 7 조(동의와 허락의 취소)</b>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p> <p><b>제 8 조(영업의 허락)</b>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b>제158조(연령의 기산점)</b>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p> <p><b>제801조(약혼연령)</b> <u>18세가 된 사람은</u>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p> <p><b>제807조(혼인적령)</b> <u>만 18세가 된 사람은</u> 혼인할 수 있다.</p> <p><b>제808조(동의를 필요한 혼인)</b>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p> <p><b>제826조의2(성년의제)</b>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p>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기준은 민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개인별로 신체적·정신적 능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객관적, 획일적인 개념인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성년/미성년을 구분

하고 있다.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사람은 19세에 달한 때 성년이 된다. 성년 연령은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2013년부터 만 20세에서 19세로 바뀌게 되었다. 개정 전 민법에서는 성년 연령에 ‘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만’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으나 만 19세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성년 연령 인하의 배경에는 우선 성년기를 만 20세로 규정한 경우에, 다른 법령과의 충돌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이 만 19세 이상의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었고,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함으로써 만 19세에 달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사회에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미성년자로서 행위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sup>57)</sup> 즉, 만 19세에 이미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법률행위를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게 되는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회 진출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실과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의 향상, 그리고 성년 연령이 점점 빨라지는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민법상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sup>58)</sup>

주지하다시피,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59)</sup> 권리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반면, 모든 자연인이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신적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 부담을 인정한다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 행위능력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상 제한능력자로서, 연령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

57)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민법해설, 법무부, 2013, 24쪽

5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13.7.1.]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일부개정 이유 참조.

5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2, 75쪽.

정되는 미성년자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법원의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제한능력자로 되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인정되었으나, 성년후견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가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행위능력제도는 본질적으로 제한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제한능력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 나아가 거래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있지만, 민법이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둔 것이다.<sup>60)</sup>

한편, 민법에서 연령은 약혼과 혼인의 성립 요건으로 쓰이기도 한다. 즉, 민법 제801조는 18세에 달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7조는 만 18세에 달한 자는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만 18세에 달하게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민법 이전에는 남녀의 약혼 연령과 혼인 적령이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즉,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로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의 구현을 위해 남녀 모두 동일하게 만 18세로 조정하였다.<sup>61)</sup> 여성과 남성의 약혼 및 혼인 연령이 차등적으로 규정된 데에는 남녀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견해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로서 시정됨이 마땅하다.

6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2, 76쪽.

6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07.12.21.] [법률 제8720호, 2007.12.21., 일부개정] 일부개정 이유 참조.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6.8.] [국토교통부령 제211호, 2015.6.8., 일부개정]
<p><b>제 4 조(주택의 공급대상)</b>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과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공공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u></li> <li>2. <u>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u></li> </ol>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주택의 공급대상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 즉, 청약관련 예(부)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동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주택청약제도에 있어서 주택청약자격이 민법상 성년자에게 인정되어 있다. 그런데, 2013년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청약자격은 ‘20세 이상인 자’로 그대로 규정되어 있어서 민법상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주택청약자격도 민법상 성년 연령인 19세 이상인 자로 개정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권고하였고,<sup>62)</sup>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 12. 27 규칙의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민법상 성년자’로 바꾸었다.<sup>63)</sup>

(2) 형사미성년자 : 형법

형 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98호, 2014.12.30., 일부개정]
제 9 조(형사미성년자) <u>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u> 는 별하지 아니한다.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u>미성년자</u> 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u>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u> 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u>13세 미만의 사람</u> 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u>미성년자의 지려천박</u>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62) 국민권익위원회,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 보도자료, 2013. 9.

6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3.12.27.] [국토교통부령 제53호, 2013.12.27., 일부개정]

형법에도 형사미성년자가 규정되어 있다.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면서, 그가 저지른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즉,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지적·도덕적 또는 성격적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 형법상 책임능력이란 법규범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의 비난가능성인 책임의 전제가 된다.<sup>64)</sup> 이러한 형사책임능력을 언제부터 인정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윤리적·정신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과 불법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 및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형사책임연령에 관해서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다.<sup>65)</sup>

그밖에도 형법에서는 미성년자를 행위의 객체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미성년자 간음·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준사기죄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설령 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연소자의 건전하고도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13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가진 객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6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292쪽.

65) “與 “형사처벌 제외 소년, 14세미만서 12세미만으로””, 뉴시스 2013. 11. 25.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5\\_0012540423&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5_0012540423&cID=10201&pID=10200) (2015. 10. 15 최종 검색)

## 5. 청 년

### (1)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4.1.1.] [법률 제11792호, 2013.5.22., 일부개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5 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락)

[법률 제11792호(2013.5.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4817호, 2013.10.30, 일부개정]

**제 2 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sup>66)</sup>에 따르면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 개발, 직업개발 훈련과정 개설, 고용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천명하면서, 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에 관해 규정한 것이 바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다. 동법 제5조는 한시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 정원의 100분의 3을 고용할 것, 이른바 ‘청년고용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제1호는 ‘청년’의 범위를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을 하나의 연령층으로 규정한 것은 최초이자 유일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청년의 범위에 다음과 같은 단서가 추가되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여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15세 이상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15세가 최저 근로연령이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재학중인 사람의 경우 ‘청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동법상 청년의 시기를 너무 빨리 잡은 것이 아닌가 한다. 즉,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는 ‘아동’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으로,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

66)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15.3.27.] [법률 제13262호, 2015.3.27., 일부개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소자’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하면 ‘청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수범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다른 법률과 같이 연령 기준을 법률 자체에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나, 생각건대 청년의 범위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동법이 청년의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고용할당제를 적용함에 따라서 그러한 연령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다.<sup>67)</sup>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인의 재판관이 다음과 같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헌결정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판시하였다.<sup>68)</sup>

“청년할당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이른바 경성(硬性)고용할당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채용정원은 경쟁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되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자발적인 추가 고용의 경우 재정지원 내지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연성(軟性)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연령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6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14. 8. 28. 2013헌마553 결정

68) 합헌으로 판시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청년할당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다. 더욱이 3년 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며, 청년할당제가 추구하는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 반면, 청년할당제가 시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년할당제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청년할당제의 시행으로 얻게 되는 특정 연령층의 실업해소라는 공익보다 다른 연령층 미취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훨씬 커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근로의 영역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다. 즉,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바, 청년할당제는 헌법의 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내지 기본질서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을 결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밀줄 필자 추가)

한편, ‘청년’에 관해서는 2014년에 청년발전기본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다. 2014. 3. 13 발의된 청년발전기본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sup>69)</sup>은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2014. 5. 22 발의된 청년발전기본법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sup>70)</sup>은 청년

69)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법은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청년”을 19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참여 촉진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청년발전기본법안” 검색(2015. 10. 15)

70)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의 정의보다 더욱 확대된 것으로서, 동 법안이 정부의 청년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청년 정책의 대상 규모가 커서 청년층의 발전을 위한 법안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현재 청년고용정

- 
- 가.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다.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정책의 분석·평가에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 바. 청년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할 자치단체별로 청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 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5조).
  -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은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청년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개발, 사회참여의 촉진·확대,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청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청년발전기본법안” 검색(2015. 10. 15)

책 관련 기본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의 범위와 상이하여 현행 정책 추진체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sup>71)</sup> 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 6. 노인, 고령자

### (1) 노 인

####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 2015.4.29.] [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
<p><b>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b>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u>60세 이상의 노인</u>(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li> <li>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li> </ol> <p>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p> <p>(하 락)</p>
<p><b>제25조(생업지원)</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u>65세 이상의 자</u>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p>
<p><b>제26조(경로우대)</b>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65세 이상의 자</u>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p>

71) 기획재정위원회, 청년발전기본법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4. 11, 12-13쪽.

<b>노인복지법</b> <b>[시행 2015.4.29.] [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b>
<p>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b>제27조(건강진단 등)</b>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65세 이상의 자</u>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p> <p><b>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b>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65세 이상의 자</u>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li> <li>2. <u>65세 이상의 자</u>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li> <li>3. <u>65세 이상의 자</u>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li> </ol>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헌법상 노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의 법적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언제부터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연령 범위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규정에서 노인에 관해서는 60세 또는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을 들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입소 등 조치와 같은 대부분의 규정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노인의 시기(始期)는 65세로 해석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노인복지주택에의 입소는 60세부터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노인의 범위에 대한 연령 기준도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노인의 연령은 곧 노인에 대한 복지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이는 국가의 재정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노인의 연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노인 연령의 상향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sup>72)</sup>

72) 정부는 2015. 10. 18.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2016~2020)’에서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복지 혜택을 받을 노인의 나이를 조정하기로 한 배경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복지 재정 문제가 자리한다. 지금의 고령화 추세라면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30년 24.3%, 2050년 37.4%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반면 노인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지난 5월 대한노인회는 “국가와 후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고령 기준 상향 조정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노인 실태조사 결과 46.7%가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노인의 연령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가 만 70세 이후로 미뤄지면서 퇴직과 함께 빈곤으로 떨어지는 ‘소득 절벽’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사업뿐만 아니라 지하철·전철 등의 교통수단과 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연령도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65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한다”, 서울신문 2015. 10. 19 자 2면

2) 노인장기요양보호법

<p><b>노인장기요양보험법</b>                  [시행 2014.2.14.] [법률 제12067호, 2013.8.13., 일부개정]</p>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노인등”이란 <u>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u>를 말한다.</p>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법 제1조). 동법의 급여 대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에 이르지 못했으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표현은 노인의 정의를 ‘65세 이상인 자’로 한 것인지, 노인 중에서 65세 이상의 자를 이 법의 급여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2) 고령자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p><b>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b>                  [시행 2014.5.23.]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일부개정]</p>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5.23.]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일부개정]

-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 4 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모집·채용
-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3. 교육·훈련
- 4. 배치·전보·승진
-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 4 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6.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p><b>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b>  <b>[시행 2014.5.23.]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일부개정]</b></p>
<p>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2017.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p>
<p><b>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  <b>[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b></p>
<p><b>제 2 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b>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u>고령자</u>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준고령자</u>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p>

우리 법령 중에는 ‘노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령자’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써, 이에 의하면 ‘고령자’와 ‘준고령자’가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동법 제2조는 제1,2호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는데,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하고,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연령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서, 앞서 살펴본 ‘노인’의 개념보다 낮은 연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 목적을 고려해보았을 때,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령으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국가가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되도록 노인의 연령을 높게 책정하는 것인 반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도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인’보다는 낮은 연령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인구 구성과 취업자의 구성을 고려해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연령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동법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상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제공,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촉진 의무 부과,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2014.1.14., 타법개정]
<p><b>제 2 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u>65세 이상인 사람</u></p> <p>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p> <p>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한편, 고령자는 주거약자로 분류되어 주거지원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을 ‘주거 약자’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65세 이상인 자’가 곧 ‘고령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살펴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의 연령범위보다 높으면서,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의 ‘노인’의 연령범위와 일치한다. 이것은 결국 개별 법률에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그 연령범위를 정한 것일 뿐 ‘노인’과 ‘고령자’가 그렇게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은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 제 2 절 연령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른 검토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일정한 연령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특정 연령을 명시해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입법례도 있다.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권리 부여 기준

#### (1)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시행 2015.6.19.] [법률 제13334호, 2015.6.19., 일부개정]
<p><b>제15조(선거권)</b> ① <u>19세 이상의 국민</u>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u>19세 이상의 국민</u>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i><li>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li></ol> <p>② <u>19세 이상</u>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i></ol>

공직선거법

[시행 2015.6.19.] [법률 제13334호, 2015.6.19., 일부개정]

- 2.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의해서 현행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

정된 것이다. 선거권 부여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과 19세 이상으로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그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합헌으로 선고한 바 있다.<sup>73)</sup>

생각건대,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 제한을 부득이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입법자는 헌법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선거권 연령을 결정할 수 있으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선거권 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요청하는 민주주의원칙 및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권 연령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이 어느 정도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헌법적 한계가 있고, 일정 연령의 사람에 대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입법자가 그보다 높게 선거권 연령을 정하였다면 선거권 연령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74)</sup>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

73)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에 대해서도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1997. 6. 26. 96헌마89 ; 헌재 2001. 6. 28. 2000헌마111; 헌재 2003. 11. 27. 2002헌마787, 2003헌마516(병합) 등). 선거 연령이 19세로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여러 결정에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결정 ; 헌재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결정 등).

74) 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결정 반대의견, 판례집, 307쪽.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선거 연령을 19세 이상에게 인정한 것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sup>75)</sup>

그러나,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크게 높아졌고,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국민의 경우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sup>76)</sup>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sup>77)</sup>을 고려할 때 선거권 연령을 인하할 필요성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 연령을 20세로 규정하고 있었던 일본도 2010년에 국민투표법상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춘데 이어, 2015년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일본 민법상 성년 연령이 20세인데 비해서, 선거 연령이 18세로 조정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일본의 청소년들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권과는 달리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대의기관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로서,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때에는 지위와 직무에 상응하는 대의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78)</sup>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음이

75) 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결정, 판례집, 306쪽.

76) 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결정 반대의견, 판례집, 307쪽.

77) 선거 연령에 관해서 오스트리아, 쿠바 등의 국가가 16세로 정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북한, 수단 등이 17세, 아프가니스탄, 칠레, 중국,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약 205개국이 18세로 정하고 있다.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며, 아르메니아, 대만 등이 20세, 피지,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21세로 정하고 있다. - 서준영, “청소년이 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의 필요성”,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13, 15-16쪽 세계의 선거연령 현황(2011년 기준) 참조.

78) 헌재 2013. 8. 29. 선고 2012헌마288, 판례집, 550쪽.

인정되어야 하고, 납세나 병역과 같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sup>79)</sup>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sup>80)</sup>

(2) 국민투표법상 투표권

국민투표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7호, 2009.2.12., 일부개정]
제 7 조(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 8 조(연령산정기준) 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투표의 투표권자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민법상 성년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국민투표법상 투표연령이 모두 동일하게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년 연령과 선거 및 투표 연령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년이 되면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는 정치적 판단능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79) 현재 2013. 8. 29. 선고 2012헌마288, 판례집, 550쪽.

80) “입법자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게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25세 미만인 사람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현재 2013. 8. 29. 선고 2012헌마288, 판례집, 545쪽.)

(3)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수급권

국민연금법 [시행 2015.4.29.] [법률 제13100호, 2015.1.28., 일부개정]
<p><b>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b>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u>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u>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p> <p>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u>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u>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u>60세가 되기 전이라도</u>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p> <p><b>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b>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u>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u>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u>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u>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u>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u>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1조 및 제66조제2항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때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p> <p>부칙 &lt;법률 제13100호, 2015.1.28.&gt;</p> <p><b>제 4 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b> 제62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p>

<p><b>국민연금법</b>  <b>[시행 2015.4.29.] [법률 제13100호, 2015.1.28., 일부개정]</b></p>
<p>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p>

「국민연금법」은 제61조제1항에서 연금 수급 연령에 대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세가 되기 전에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종전의 59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 부칙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sup>81)</sup> 동법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18세에서 60세까지로 인정하면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시기를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을 정한 것은 60세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은퇴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근로 소득이 없게 되므로 연금을 통한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81)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에 대처하여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중대하고, 종전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을 동일하게 상향시키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연금수급권의 내용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59세에서 60세로 인상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뢰의 손상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헌재 2013. 10. 24 선고 2012헌마906 결정, 판례집, 327쪽)

그런데, 현행법은 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조정에 관한 내용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급여 수급 연령 및 지급 연기에 관한 연령을 규정하면서도 출생연도에 따라서 그 연령을 가산할 수 있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5. 1. 28 개정된 법률 부칙 제4조는 “제62조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의 본문상 연령 규정의 의미가 부칙에 의해 상당히 반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금수급연령이 어떻게 상향되는지 현재 적용되는 상향조정된 연령이 얼마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칙이 아닌 본문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2. 의무 발생 기준

### (1) 병역법상 병역 의무

병역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4호, 2014.5.28., 일부개정]
제 8 조(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u>18세부터</u>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제 9 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u>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u> 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징병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u>19세가 되는 해에</u>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

병역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4호, 2014.5.28., 일부개정]
<p>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p> <p><b>제14조(병역처분)</b>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관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li> <li>2.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 제2국민역</li> <li>3.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 병역면제</li> <li>4.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li> </ol> <p><b>제20조(현역병의 모집)</b>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u>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p>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병역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의무자가 병역 의무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19세에 달한 때부터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이와 같이 병역의무의 발생 및 징병검사 시기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즉,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sup>82)</sup>이라고 판시하였다.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발생을 만 18세로 정한 것은 그 정도 연령이면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3)</sup>

(2) 국적법상 국적선택의무

국적법 [시행 2014.6.19.] [법률 제12421호, 2014.3.18., 타법개정]
<p><b>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b> ① <u>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u>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p> <p>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p>

82)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0

83) 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판례집, 307쪽.

국적법 [시행 2014.6.19.] [법률 제12421호, 2014.3.18., 타법개정]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 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sup>84)</sup>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즉, 종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또는 국적보유신고자 등이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하나의 국적만을 보유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였었다.<sup>85)</sup> 그러나, 2010년 제9차 개정을 통하여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시기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도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적선택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국적보유신고자 등에 대한 이중국적의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다.<sup>86)</sup>

이러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는 만 20세를 기준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다. 즉,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만 18세에 달한 대한

84)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는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복수국적자’로 정의하고 있다.

85) 이상훈, “개편된 이중국적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133쪽.

86) 이상훈, 앞의 글, 133쪽.

민국 국민인 남성)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만20세를 기준으로 국적선택의무를 정한 이유는 국적법의 조항은 1997년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과 국적법은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수반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성년 여부가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민법상 미성년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22세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만 20세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아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 3. 자격 취득 또는 상실 기준, 결격 사유

#### (1) 자격 취득 또는 상실

##### 1) 국민연금법상 가입 자격

국민연금법 [시행 2015.4.29.] [법률 제13100호, 2015.1.28., 일부개정]
<p><b>제 6 조(가입 대상)</b>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p>
<p><b>제 8 조(사업장가입자)</b>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p>

<b>국민연금법</b> <b>[시행 2015.4.29.] [법률 제13100호, 2015.1.28., 일부개정]</b>
<p>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삭 제 &lt;2011.6.7.&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li> <li>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li> </ol> </li> </ol> <p><b>제 9 조(지역가입자)</b> 제8조에 따른 <u>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li> <li>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li> <li>다. 별정우체국 직원</li> <li>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li> </ol> </li> <li>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3. <u>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u>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li> <li>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li> </ol>

**국민연금법**

[시행 2015.4.29.] [법률 제13100호, 2015.1.28., 일부개정]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1. 사업장가입자
-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한 때
-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b>국민연금법</b> <b>[시행 2015.4.29.] [법률 제13100호, 2015.1.28., 일부개정]</b>
<p>3. 사용관계가 끝난 때</p> <p>4. <u>60세가 된 때</u></p> <p>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p> <p>1. 사망한 때</p> <p>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p> <p>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p> <p>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p> <p>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p> <p>6. <u>60세가 된 때</u></p> <p>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p> <p>1. 사망한 때</p> <p>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p> <p>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p> <p>4. <u>60세가 된 때</u></p> <p>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p> <p>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p> <p>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p> <p><b>제13조(임의계속가입자)</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제6조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u>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p> <p>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u>60세가 된 자</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p>

<b>국민연금법</b> <b>[시행 2015.4.29.] [법률 제13100호, 2015.1.28., 일부개정]</b>
<p>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p> <p>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p> <p>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p> <p>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p> <p>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p> <p>(하 락)</p>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또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에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 연령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가입자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구별되어 있다. 즉,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는 직장에 고용되었거나 그 직장의 사용자가 된 때, 직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때에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대상제외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할 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등에 가입자격을 취득한다.

한편,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 대상을 연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이 되면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모두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응시 연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5.9.25.] [대통령령 제26566호, 2015.9.25., 타법개정]
<p><b>제16조(응시연령)</b>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에 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7급 이상: 20세 이상</li> <li>2. 8급 이하: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li> </ol> <p>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는 응시연령을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서는 응시연령을 7급 이상인 경우에는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하면서 교정·보호직렬은 8급 이하라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4호, 2015.10.20., 일부개정]
<p><b>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b>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87)에</p>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4호, 2015.10.20., 일부개정]
<p>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p> <p>②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p> <p>(중 략)</p> <p>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012.12.28. 대통령령 제24275호에 의하여 2012.5.31.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p>

한편,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도 응시연령이 규정되어 있다. 영 제3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해에 별표에 정한 응시연령에 도달하여야 한다. 본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제39조제1항에 규정되었었고, 순경의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30세를 기준으로 순경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87)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1의3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다음과 같다.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 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합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도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으로써<sup>88)</sup>, 동 조항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 (2) 결격 사유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를 아예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별 법령은 해당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관련 주체의 행위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상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에게는 그 자격을 부여하고, 부합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sup>89)</sup> 이러한 ‘결격사유’는 ‘일정한 자격을 향유할 수 없도록 배제시키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종래의 행위무능력자 제도 하에서는 미성년자 외에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해서 임용 자격 및 공무담임의 제한 또는 금지, 공인된 자격 취득 제한 또는 금지, 법인·단체의 대표, 임원, 사원의 자격 제한 또는 금지, 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 또는 금지, 특정 영업이나 업종의 허가 또는 면허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sup>90)</sup> 한편, 법령에 따라서는 결격 사유를 규정하면서 특정 연령을 직접 명시

---

88) 이에 관해서는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과 1인의 단순위헌 의견이 개진되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획일적으로 30세까지는 순경과 소방사·지방소방사 및 소방간부후보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점은 순경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소방사·지방소방사와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경우 특채시험의 응시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2. 5. 31. 선고 2010헌마278)

89) 김현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33쪽.

90) 김현수, 앞의 글, 34쪽.

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sup>91)</sup> 이와 같이 결격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연령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결격사유로서 ‘미성년자’를 규정한 법령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령>

법 령	내 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가맹거래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공인노무사법	제 4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공인회계사법	제 4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관세사법	제 5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91) 도로교통법[시행 2015.1.29.] [법률 제12917호, 2014.12.30., 일부개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제 3 장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유형별 검토

법 령	내 용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담배사업법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변리사법	제 4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6 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세무사법	제 4 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 6 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 ·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법 령	내 용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운법	제 8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 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4. 연령등급제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동법 제29조에 따르면 영화업자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고, 분류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된다. 상영등급은 위원회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판단하며, 이 때 연령이 등급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동조 제7항에 따르면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등급 분류 제도에 있어서도 청소년 보호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등급 분류 중에서 특히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둘러싸고 청소년의 연령이 문제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의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만 18세에서 만 19세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상영등급을 받게 된 영화에 대해서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안되며, 특히 청소년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의 영화에 대해서는 청소년 입장이 불가하다.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동법 제50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제도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제가 도입되어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제작 또는 배급 이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되며, 이때 만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다.

## 5. 복지 대상의 설정 기준

###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의 안전과 건강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 및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의 ‘아동’의 정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영유아 및 청소년과 연령이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 및 양육 차원에서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어 있고, 보육에 관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 아동복지법과 같은 복지의 내용이 영유아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정의를 영유아와 구분되게 가령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영유아의 복지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다.

### (2)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동법은 제3조에서 청소년에게 국가나 지자체의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우대를 규정하고, 제9조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1조 이하에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아동복지법상 복지 지원 내용과 구별되는 복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살펴볼 때, 동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과 중복된다고 해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법이 청소년의 범위를 24세 이하까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증 발급의 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

### (3)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연령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 혜택의 수급 연령을 65세

이상인 자에게 인정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해석된다.

### 제 3 절 소 결

현행 법령에서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일정한 연령대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용어를 정의하면서 연령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유아, 아동, 청소년, 연소자, 소년, 미성년자, 청년, 노인, 고령자를 들 수 있다.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도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상 연령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집행자나 수범자의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연령을 나타내는 개념에 따라 현행 법령의 연령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연령 기준	법적 근거
영 아	규정 없음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8조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
	6세 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11조 등

제 3 장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유형별 검토

대상자 구분	연령 기준	법적 근거
유 아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아 동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준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 제1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8호)
	18세 미만인 사람	입양특례법 제2조제1호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	형법 제274조(아동혹사)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18세 미만인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제1호

대상자 구분	연령 기준	법적 근거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준용: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1호)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준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 제4호,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만 19세 미만의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10호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소년	19세 미만인 자 *촉법소년: 10세이상 14세미만 *우범소년 : 10세 이상	소년법 제2조

제 3 장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유형별 검토

대상자 구분	연령 기준	법적 근거
연소자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공연법 제2조 제6호
	18세 미만인 자	근로기준법 제66조
	18세 미만인 자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1항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	민법 제4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	형법 제9조
청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노인	60세 이상의 노인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입소자격)
	65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법 제25조부터제28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cf. 준고령자 50세이상 55세미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의 연령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아동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법체계 내에서도 법률마다 그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가지는 청소년보호법과 영비법 등 매체 관련 법률에서의 청소년의 범위가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몇차례 있었지만 매년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음으로 특정한 연령을 직접 명시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서 권리 부여, 의무 부과, 자격 상실, 결격 사유, 연령 등급, 복지대상 선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정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때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고려함을 알 수 있었고, 자격 상실이나 결격 사유는 행위능력 유무를 고려한 입법례가 많았다. 연령 등급은 유해한 표현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12세, 15세,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을 기준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 표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복지대상을 설정할 때에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일정한 연령대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령이 제정되었다.

## 제 4 장 연령기준 관련 법적 쟁점 검토

### 제 1 절 연령 용어의 다양성과 중복성

#### 1. 영유아와 아동, 어린이

-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는 6살 미만의 사람
- 유아교육법 : ‘유아’는 만 3세 이상 취학전의 아동
- 아동복지법 :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
- 도로교통법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보건법」에서는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의 대상으로 보는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를 다른 능력에 상관없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신체 발달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를 교육의 대상으로 볼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능력에 따라 연령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 이상 취학전의 아동으로 ‘유아’를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만 6세에 도달하면 취학명부가 작성되고,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해에 취학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교육의 대상으로 볼 때에는 만 3세부터 유아교육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만 6세±1세부터 초등교육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동 또는 어린이로 본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아동 또는 어린이의 연령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입양특례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체로 아동을 부모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객체로 보면서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까지 확대를 하고 있어서 과연 그러한 경우까지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면서도 입법례에 따라 13세 미만으로 보거나, 13세 이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아동과는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와 어린이, 아동은 대략적으로 6세, 13세, 18세를 기준으로 나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의 목적(예컨대, 교육, 복지, 보호의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범위가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아동과 청소년

- 아동복지법 :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아동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의 연령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하고 있어서 9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은 아동인 동시에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법률마다 입법목적에 따라 적용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같은 영역에 속하는 법률에 있어서 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예컨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비교해보면, 9세 미만인 사람의 복지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9세부터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모두 적용되며,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연령에 따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13세 또는 14세 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92)</sup> 왜냐하면, 아동은 그 특성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은 자기 주장과 일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sup>93)</sup> 「아동복지법」의 대상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위주에서 일반아동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9세에서 18세까지의 동일연령집단의 대상자가 중복됨으로 인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법률도 존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본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었다가 아동의 성을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모두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아,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 3. 청소년과 연소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단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공연법 :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단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근로기준법 :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

92) 허남순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2002, 54쪽.

93) 허남순 외, 앞의 책, 54쪽.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공연법」은 ‘연소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지칭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이들 법률에서 청소년과 연소자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자(단,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동일하다. 「공연법」에서 연소자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연소자를 규정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서, 다른 법률이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법」만 개정이 되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연법」에서 ‘연소자유해공연물’에 대해 연소자의 관람을 제한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이다. 즉, 매체 관련 법률에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연소자’라는 용어는 헌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용어를 바꾸기에는 어렵다.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연소자라 할지라도 15세 미만의 자 또는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연소자의 범위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동일 개념의 상이한 연령기준

### 1.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 (1) 청소년법체계 내에서 ‘청소년’ 연령

- 청소년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상동

- 청소년보호법 : 연나이 19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연나이 19세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 법체계는 크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산업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매체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법체계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러한 연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준용되고 있다. 청소년 법체계에서 또다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본래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회통념상 성인까지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하는 ‘연나이 19세’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연나이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법체계에서 청소년 연령은 크게 청소년기본법(9세 이상 24세 이하)와 청소년보호법(연나이 19세 미만)으로 나누어진다.

## (2) 청소년법체계 내에서 청소년 연령기준의 정비 필요성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지에 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청소년을 9세 이상부터라고 인정한 이유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9세 미만의

자는 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아동의 연령은 9세 미만의 자로 해석될텐데, 이것은 현행 법령에서 ‘아동’에 대한 연령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9세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청소년기본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범위를 24세 이하까지 확대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24세 이하까지라면 대학생까지 청소년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19세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했던 것이 「청소년보호법」 등의 입법취지임을 고려할 때, 19세 이상 24세 이하까지 청소년으로 규정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이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국공립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고, 수련활동에 대한 진흥 지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취학중인 경우 소득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복지 및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이유로 청소년 연령 자체를 넓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셋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여도,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넓은 범위의 정의보다는 청소년 관련 법령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그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컨대,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 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의 자’로 통일하고,

개별 법률마다 연나이로 해야 할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해야 할 경우, 대학생 등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라서, 신체적·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하는 동시에 사회통념상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으로 보아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연나이 19세를 채택한 것은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이 경우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할 때 시기(始期)를 규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일정한 연령을 시기(始期)로 정했을 때, 그 연령 미만의 자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의 청소년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단서로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현행 입법례는 타당하다.

## 2. 청소년보호법과 매체 관련 법률

### (1) 매체 관련 법률에서의 ‘청소년’ 연령 변천사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서 청소년 연령은 주로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에서 청소년관람 또는 이용불가의 기준에 적용되며,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등급분류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의 개념설정 및 연령기준을 포함하여 청소년에 관한 기존의 규제법제가 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이 각각 소관부처가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주체가 된 알 권리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측면과 청소년보호의 이익을 위해 일반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이 구별되지 못한 채, 별개의 관점이 혼동되어 왔던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sup>94)</sup>

## (2) ‘청소년’ 연령 통일 필요성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했을 경우, 매체 관련 법률에서도 이러한 정의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매체 관련 법률에서 ‘청소년’ 관련 규정을 두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술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매체 관련 법률에서만 고등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면서,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연나이로 한다는 단서를 규정하는 방식이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현재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나이 19세 기준을 채택했을 경우에 오히려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의 이용 가능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학제상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매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지도의 관점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도 제기되는 동일한 문제이다.

94) 박용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규제 및 청소년보호, 헌법논총 제13집, 헌법재판소, 2002, 186쪽.

청소년 연령 정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민법상 성인 연령 개정과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의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 중에 2013년에 발의된 매체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95)</sup>

법률명	의안번호	주요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877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로 규정한 현행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876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로 규정한 현행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883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로 규정한 현행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880	“연소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 <sup>96)</sup> 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

9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각각의 법률 검색한 결과이다(2015. 10. 15 최종방문).

96) 「초·중등교육법」 제2 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이상 4개의 의안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바, 이에 관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검토보고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 즉, 청소년의 연령 기준 변경에 대한 타당성은 ① 해당 법률이 청소년을 규정한 입법목적 및 ② 유사한 입법목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타 입법례 등을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법률의 입법 목적을 고려한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다.<sup>97)</sup> 그런데, 청소년을 현행과 같이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로 규정하는 경우, 만 18세의 자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되어, 고등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위의 법률상의 청소년 보호규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sup>98)</sup> 이러한 법 적용상의 차별성은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자라고 하여 청소년이 아니라거나 또는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청소년 관련 입법례를 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만 18세의 자”를 청소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상호간 적용상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sup>99)</sup>

#### 5. 각종학교

9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3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4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3쪽.

9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4-5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5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4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3쪽.

9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

따라서, 청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만 18세의 자”를 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위법률상의 청소년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된다고 보았다.<sup>100)</sup>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 중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도 청소년에 포함되는데, ① 현행 청소년 관련 법률의 규정과 상이하어 법집행상의 혼란 및 법적 안정성의 침해 우려가 있고, ②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학생에게까지 게임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되 청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101)</sup>

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5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5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4-5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3쪽.

1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6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6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5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4쪽.

1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6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7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5-6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4쪽.

## 제 3 절 선거연령의 인하

### 1. 선거연령의 변천사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제헌 헌법부터 제2차 개헌시까지는 개별 선거법에 ‘21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제3차 개헌 당시부터 유신헌법,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 ‘20세’로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에 이르러 법률에 위임하였는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개별 선거법에서 ‘2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1994. 3. 16.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에 선거권 연령에 관하여 18세로 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민법상의 성년 연령인 20세로 합의하게 되었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2005. 8. 4.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면서 당시의 시대적 변화, 즉 교육기회의 확대와 언론매체 등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19세에 달한 국민도 성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고,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였다.<sup>102)</sup>

### 2. 선거연령의 인하 논의 검토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의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 및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102) 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결정 반대의견

선거권 연령에 관한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면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의 여부를 고려하여 선거권 연령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103)</sup>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요구되는데,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중요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sup>104)</sup>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 접근성 및 소통의 증대로 인한 국민의 정치의식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일률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이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병역의무와 공무원 응시연령, 혼인 적령 등을 18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18세가 되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과<sup>105)</sup>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보다 낮은 18세를 선거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 연령 인하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1. 17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sup>106)</sup>

103) 헌재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결정 ; 헌재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결정 등

104) 헌재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판례집, 312쪽.

105) 이상경, 청소년의 선거연령 18세 인하문제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제25권제4집 (통권 제48집), 한양법학회, 2014, 386쪽.

106)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2013. 1. 17), 1쪽.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언론매체나 정보기술의 발전 등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능력과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고등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로 귀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부에서는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권고하였다.<sup>107)</sup>

### 3. 각국의 선거연령

#### (1) 각국의 선거연령 현황

선거연령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232국 중 92.7% 정도(215국)이 18세 이하를 선거연령으로 정하고 있고,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도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은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인하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시켜 나가는 추세이다.<sup>108)</sup>

#### (2) 일본의 선거연령 인하

일본에서는 2007년 「국민투표법」 제3조가 개정되어 만 18세 이상인 자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되었고, 2015년 6월 공식

107)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2013. 1. 17), 4-7쪽.

108)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2013. 1. 17) 7쪽.

선거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가결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제9조의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것이다.<sup>109)</sup> 이것은 1945년 선거연령이 만 25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바뀐 이후 70년 만에 변경된 것으로서,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만 18세~19세 유권자는 약 2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10)</sup>

이와 같이 일본에서 선거권 연령이 인하된 데에는 민법상 성년연령 인하에 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민법의 성년 연령은 만 20세로서, 2008년 당시에 법무성에서 성년 연령 인하에 관해 검토한 바 있다. 이 때 고려된 사항은 청소년의 사회참가, 자립을 촉진한다는 측면, 부모의 부당한 친권행사로부터 해방된다는 측면, 외국의 성년 연령 동향 등이었다.<sup>111)</sup> 2009년에 발표된 최종보고서에서는 민법의 성년연령과 선거연령이 일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sup>112)</sup> 일본국 헌법 제15조제3항이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성년’의 의미에 대해서는 민법의 성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별도의 공법상의 성년을 지칭하는 것인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어느 쪽 입장에서든 헌법은 성년자에 대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민법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데

109) 공직선거법 제9조 (선거권) 제1항 일본의 국민으로 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선거권을 갖는다.

110) 김수홍, “일본의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인하에 관한 검토”, 『입법상 연령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제2차 워크숍 발표자료집(2015. 10. 6), 한국법제연구원, 2015, 35쪽.

111) 法務省法制審議會民法成年年齢部会「民法の成年年齢の引下げについての中間報告書」(2008年) 11頁以下、전혜정, 일본 민법의 성년연령 인하에 관한 검토, 법제(2009년 6월), 17쪽 이하.

112) 法務省法制審議會民法成年年齢部会「民法の成年年齢の引下げについての最終報告書」(2009年) 3頁以下.

이론이 없다고 보았다.<sup>113)</sup> 따라서, 민법의 성년연령을 인하하지 않고,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선거연령과 민법의 성년연령과도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sup>114)</sup> 그러나, 선거연령이 인하될 경우, 민법상 성년 연령을 선거연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선거연령 인하로 인해 새로이 선거권을 취득하게 되는 만 18세와 만 19세의 자에게는 정치 참가 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선거권 행사에 보다 책임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성인이 되는 의미를 이해하기 쉽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연령과 성년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sup>115)</sup>

이와 같은 법무성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성년연령 인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 연령 인하만 결실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성년 연령 인하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자민당 등 정당을 중심으로 미성년자보호법(우리의 청소년보호법에 해당) 등의 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sup>116)</sup>

#### 제 4 절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즉, 14세 미만의 자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113) 法務省法制審議會民法成年年齢部会「民法の成年年齢の引下げについての最終報告書」(2009年) 3頁以下。- 김수홍, 앞의 글, 43쪽.

114) 法務省法制審議會民法成年年齢部会「民法の成年年齢の引下げについての最終報告書」(2009年) 3頁以下。- 김수홍, 앞의 글, 43쪽.

115) 法務省法制審議會民法成年年齢部会「民法の成年年齢の引下げについての最終報告書」(2009年) 3頁以下。- 김수홍, 앞의 글, 44쪽.

116) “일본 자민당, 18세 음주·흡연 허용 추진하다 거센 ‘역풍’ 만나”, 경향신문 2015. 9. 3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1403311&code=97020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1403311&code=970203) (2015. 10. 15 최종방문)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117)</sup>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의 또다른 근거로는 만 14세 미만의 가해자에게 범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차별 및 희생 문제이다. 즉,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지, 만 14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고, 특히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sup>118)119)</sup>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몇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교육적·환경적 영향, 세계 각국의 추세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sup>120)</sup>

세계 각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7세 미만(싱가포르, 스위스), 10세 미만(영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13세 미만(프랑스), 14세 미만(독일, 일본, 이탈리아), 15세 미만(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16세 미만(포르투갈), 18세 미만(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17) “형사 미성년 연령 하향조정 ‘논란’”, 연합뉴스 2013. 5. 21 기사,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5/21/0701000000AKR20130521107000053.HTML>(2015. 10. 30 최종방문)

118) 정재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 제50호 (2012. 봄) 한국형사법학회, 2012, 46쪽.

119)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50대 여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초기에는 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에 대한 혐오범죄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으나, 한 초등학생이 벽돌 낙하실험 놀이를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그 초등학생은 10세로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10세 초등학생… “미성년자 처벌 불가능””, 서울신문 2015. 10. 16 기사 참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16500059>(2015.10.30 최종방문)

120) 정재준, 앞의 글, 26-27쪽.

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sup>121)</sup> 14세 미만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sup>122)</sup>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현실적으로 높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등을 재검토하여 범죄행위자의 연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보충의견이 제시되었다.<sup>123)</sup>

121) “[런치리포트]‘소년범죄’ 딜레마”, the300, 2015. 10. 30. 기사 참조.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3008507646060> (2015. 10. 30 최종방문)

122)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헌재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전원재판부) 다수의견

123)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 이것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결합하여 범죄행위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2세 미만의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국가가 12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행위자의 연령으로 인하

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2007년에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추었는데, 이것은 국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연령 청소년 범죄에 조기에 개입하여 재범률을 줄이고 보호와 선도를 하겠다는 소년법상의 이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24)</sup>

## 제 5 절 노인 연령의 상향

입법상 언제부터 노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노화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고,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이 늘어나는 반면에, 경제성장 및 복지재원의 조달에 기여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sup>125)</sup>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2016-2020)’에서는 고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sup>126)</sup>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상 각종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 지급등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기구인 UN의 경우는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연령인구로 보고,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보고 있으며, OECD나 EU도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27)</sup>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 연령을

여 피해자가 생명·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형법 및 소년법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현재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전원재판부) 보충의견 124) 정재준, 앞의 글, 53-54쪽.

125) 김경호, 앞의 글, 554쪽.

126) “65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한다”, 서울신문 2015. 10. 19 기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19002001> (2015. 10. 30 최종방문)

127) 정경희, 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관하여 대한노인회도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령 기준 상향 조정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2014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sup>128)</sup> 이와 같이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sup>129)</sup>

그러나, 노인 연령을 상향하게 되면 복지 수급 연령이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결과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빈곤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및 노인 일자리 확보 등 소득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011.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2쪽.

128) “65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한다”, 서울신문 2015. 10. 19 기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19002001> (2015. 10. 30 최종방문)

129)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기준연령’을 묻는 정부의 설문조사에서 2004년에는 응답자의 55.8%가 ‘70세 이상’이라고 답했지만, 2014년에는 10명 중 8명이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 “[新허기진 군상] (7) 노후가 드리우는 공포 - 대한민국 ‘노인’의 역사”, 경향신문 2015. 11. 2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22046115&code=21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22046115&code=210100)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은 다양한 목적으로 설정 및 적용되고 있다.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권리나 의무의 발생 시점을 연령을 통해서 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시기를 정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연령을 설정하고, 복지의 대상을 명시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연령대를 의미하는 개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구체적인 연령을 직접 명시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 법령에서 특정한 연령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는 영아, 영유아, 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연소자, 소년,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청년, 고령자, 노인을 들 수 있다. 입법상 연령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입법목적에 적절한 능력의 고려

연령 기준은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기준이어야 하므로, 연령 설정시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연령 기준이 설정, 적용되는 목적을 분류한 결과, 권리 부여, 의무 부과, 자격 취득 또는 제한, 결격 사유, 청소년 보호, 복지대상 설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연령 기준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성숙도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행위능력,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 독자적 판단능력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연령을 정할 때에도 대의기관을 선출함으로써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반드시 사법상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년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위가 가능하고, 초·중등교육법상 교육을 수료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금수급권 등 사회보장 권리를 부여할 때에는 경제활동능력 및 국가의 복지재정 수요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령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병역의무의 발생 시기를 정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발달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초·중등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는 외에, 인구 구성 및 병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기준 또는 결격사유로서 연령을 설정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그러한 자격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학능력과 행위능력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교육과정과 성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가 필요한 정신적·신체적 미성숙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 교육을 통한 지도의 필요성, 그리고 일정한 행위 제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교형량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복지 대상을 정하는데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는지 여부, 국가의 복지 재정 등을 고려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헌법상 기본권 보장

법령에 특정 연령을 규정하게 되면, 그로 인해 그 연령에 속한 사람들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에, 연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이 헌법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차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차별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간에 비교 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할당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피해가 되도록 크지 않도록 덜 침해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체계적합성의 원칙

개별 법령에서 연령 기준을 설정,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부정합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연령을 정의하거나, 연령을 정의하면서 다른 연령대와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이한 연령기준을 설정하거나 또는 연령 범위를 중복해서 정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며, 청소년 법체계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령에서의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제 2 절 현행 법령상 연령기준 정비 방향

### 1. 아동 관련 법령

#### (1) 아동, 어린이 용어 정비

일반적으로 영유아와 아동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는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서 6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서 역시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서 대체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과 어린이는 보통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서는 13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초등학교 학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식생활안전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범위를 ‘초·중·고등학교 학생이거나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법체계상 혼란이 야기된다. 어린이식생활안전 특별법에서는 식생활안전구역 설정 등 학교 내외에서의 식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만큼 ‘어린이’의 범위를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넓은 연령 범위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라는 명칭을 고수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한 후, 실익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를 ‘아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의 정의 수정

전술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로 하되, 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까지 인정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까지 가산하고 있는 규정은 22세 +  $\alpha$  까지 ‘아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보는 것이어서 용어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법 제4조제5호의 ‘아동’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괄호를 삭제하고,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인정하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인정한다.”고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2. 청소년 관련 법령

청소년 법체계에서 청소년 연령은 크게 청소년기본법상의 연령(9세 이상 24세 이하)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연나이 19세 미만)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청소년의 연령을 가장 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함으로써, 초등학교 재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대학생까지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9세 미만은 청소년과 구별되는 아동이라고 보는 것인지는, 1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의 청소년 연령과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혼란이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관련 법률은 각각 입법 목적에 차이가 있어서 연령을 다르게 정할 필요성도 일응 수긍이 가지만,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연령 기준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청소년

연령에 관한 원칙을 청소년 기본법에 정하면서,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연령 범위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이러한 원칙을 규정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 정의는 모두 이것을 따르되,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성년 연령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들이 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 연령의 원칙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했을 경우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두 청소년의 정의를 통일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법률마다 추가적인 범위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정의 규정에 단서로 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종래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었던 부분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과 매체 관련 법률상 청소년 연령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보호법은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연나이 19세 미만’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과 매체 관련 법률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청소년 연령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두가지 청소년 연령에 대한 정의를 비교해보면, 사실상 몇개월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매체 관련 산업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양 법체계의 연령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연법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청소년의 정의를 그대로 채용하면서도 ‘연소자’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고, 사실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연관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는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 고 문 헌

### I . 국내문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  
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12.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위원회 결정문(2013. 1. 17)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2-221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방안」, 2012. 12. 17)

기획재정위원회, 청년발전기본법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4. 11,

김경호,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  
준의 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한국법정책  
학회, 2005

김수홍, “일본의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인하에 관한 검토”, 『입법  
상 연령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제2차 워크숍 발표자료(2015.  
10. 6), 한국법제연구원, 2015

참 고 문 헌

- 김현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 박용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규제 및 청소년보호, 헌법논총 제13집, 헌법재판소, 2002
- 서준영, “청소년이 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의 필요성”,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국회, 2013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민법 해설, 법무부, 2013.
- 이상경, 청소년의 선거연령 18세 인하문제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제25권제4집(통권 제48집), 한양법학회, 2014.
- 이상훈, “개편된 이중국적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 이준우, 연령에 따른 법령적용 유형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18호, 한국법제연구원, 2000.
- 장미희, “우리 민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례”, 『입법상 연령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제1차워크숍 자료집(2015. 7. 23), 2015.
- 전보경, 영아살해죄의 규정과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2013.9),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전혜정, 일본 민법의 성년연령 인하에 관한 검토, 『법제』 2009. 6., 법제처, 2009
- 정경희, 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2011.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정재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 제50호 (2012. 봄) 한국형사법학회, 2012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 한수용, 헌법학, 법문사, 2015.
- 허남순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2002.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 홍완식, 아동·청소년 등의 연령기준, 「입법정책」 제1권제1호(2009), 한국입법정책학회
- 홍완식, 연령기준에 대한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피앤씨미디어, 2014.
- 황승흠, “청소년보호연령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청소년보호 연령 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 발제문,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 II. 국외문헌

- 法務省法制審議會民法成年年齢部会, 「民法の成年年齢の引下げについての中間報告書」(2008年)
- 法務省法制審議會民法成年年齢部会, 「民法の成年年齢の引下げについての最終報告書」(2009年)
- 芦部信喜, 『憲法 (第6版)』(岩波書店、2015年)

## III. 신문기사

- “65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한다”, 서울신문 2015. 10. 19 기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19002001> (2015. 10. 30 최종방문)

참 고 문 헌

- “[런치리포트]‘소년범죄’ 딜레마”, the300 2015. 10. 30. 기사 참조.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3008507646060>  
(2015. 10. 30 최종방문)
- “[新허기진 군상] (7) 노후가 드리우는 공포 - 대한민국 ‘노인’의 역사”,  
경향신문 2015. 11. 2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22046115&code=21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22046115&code=210100) (2015. 11. 3 최종방문)
-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10세 초등학생…“미성년자 처벌 불가능””,  
서울신문 2015. 10. 16 기사 참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16500059>  
(2015. 10. 30 최종방문)
- “일본 자민당, 18세 음주·흡연 허용 추진하다 거센 '역풍' 만나”, 경향  
신문 2015. 9. 3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1403311&code=97020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1403311&code=970203) (2015. 10. 15 최종방문)
- “형사 미성년 연령 하향조정 ‘논란’”, 연합뉴스 2013. 5. 21 기사,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5/21/0701000000AKR20130521107000053.HTML> (2015. 10. 15 최종방문)

《부록》

#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표

##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표

법률명	연령	0세	3세	6세	9세	14세	15세	18세	19세	24세	25세	29세	34세	50세	55세	60세	65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 영아																
		유아 (취학전)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모자보건법	신생아(28일), 영유아																
		영유아															
도로교통법	어린이(13세 미만)																
		아동															
아동복지법	아동																
임양특례법	아동																
형 법	아동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취학중22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장애인등록)																
초중등교육법																	
		취학 의무															

《부록》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표

법률명	연령															
	0세	3세	6세	9세	14세	15세	18세	19세	24세	25세	29세	34세	50세	55세	60세	65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연나이 19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연나이 19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청소년(연나이 19세)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고등학교교재학생 포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고등학교교재학생 포함)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고등학교교재학생 포함)														
소년법	소년															
근로기준법						근로최저연령										
직업안정법		연소자														
공연법		연소자(고등학교교재학생 포함)														
병역법		병역의무														

《부록》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표

법률명	연령	0세	3세	6세	9세	14세	15세	18세	19세	24세	25세	29세	34세	50세	55세	60세	65세	
민법		미성년자																
		약혼, 혼인 연령 (18세)																
공직선거법		선거권(19세)																
		국회의원피선거권(25세)																
		대통령피선거권(40세)																
형법		형사미성년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15-29세)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5-34세																
노인복지법		*노인 복지주택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준 고령자, 고령자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관한법률		고령자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가입대상																
		노령연금수급권																